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42호 2023. 12. 13.(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52호	웅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153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23-155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4
거창군 고시 제2023-156호	도로명주소 고시	7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839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
--------------------	---	---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응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거창군 응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응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응양면 거점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써 지역 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 2,800, 도 360, 군 840)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응양면 노현리 일원
 -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 활력충전소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안전한 보행환경 및 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등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수탁)
6. 사업시행기간 : 2020. 1. ~ 2023. 12.
2020. 1. ~ 2024. 12.
7. 시행계획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8940-8272)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8940-5546)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거창군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북상면 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 7,600백만원(국 3,570, 도 959, 군 3,071)
4. 주요 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일원
 - 나. 세부사업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기초생활기반	▶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3층) - A=1,628.58㎡	좌동 (변경 없음)
지역경관개선	▶ 다목적 광장 A=1,657㎡ ▶ 갈계숲 주변 경관정비 1식 ▶ 테마둘레길 정비 2개소	▶ 다목적 광장 A=2,011㎡ ▶ 갈계숲 주변 경관정비 제외 ▶ 테마둘레길 정비 1개소
지역역량강화	▶ 교육,건축,컨설팅 등	좌동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 1. ~ 2022. 12.
 변경> 2016. 1. ~ 2023. 12.
7.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 농촌과 농촌개발담당(☎940-8271)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12. 13.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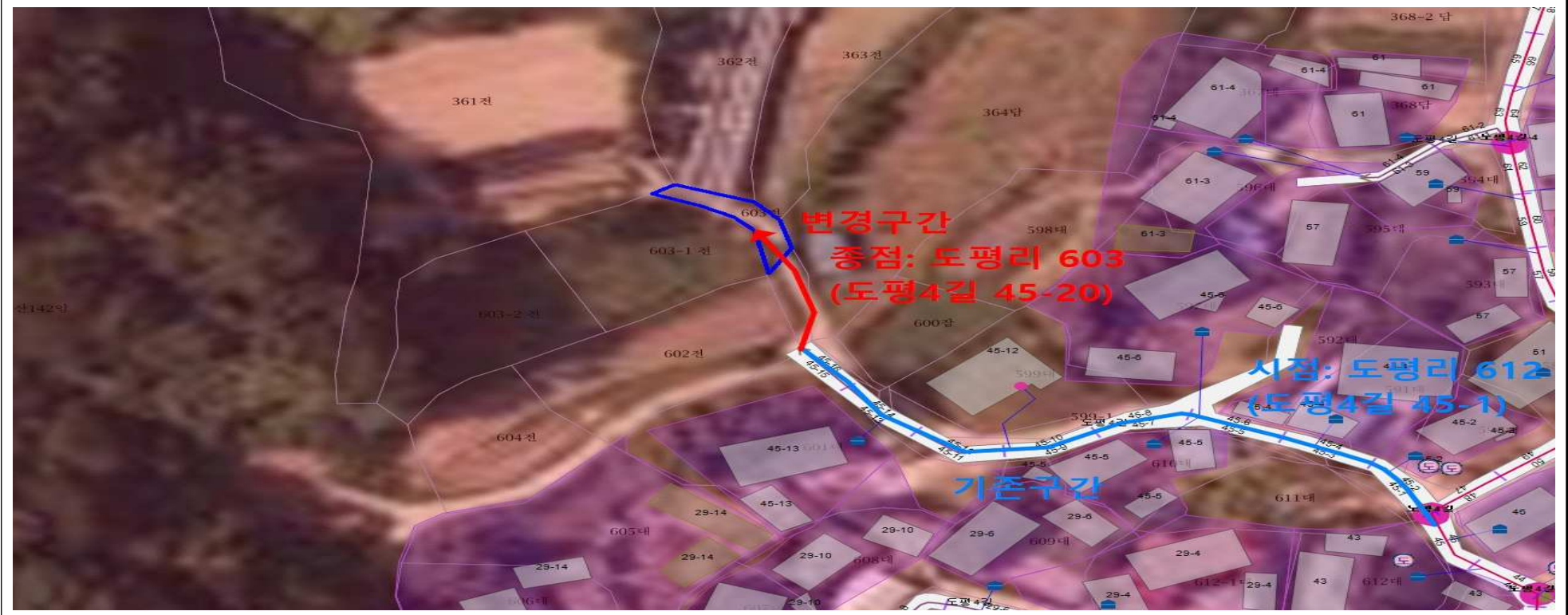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신원면	변경 전	내동길	신원면 덕산리 534 (내동1길 56-1)	신원면 덕산리 526 (내동1길 56-12)	도면참조	2	없음	종속구간 변경(연장)	직권
		변경 후	내동길	신원면 덕산리 534 (내동1길 56-1)	신원면 덕산리 501-1 (내동1길 56-58)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2	주상면	변경 전	도평4길	주상면 도평리 612 (도평4길 45-1)	주상면 도평리 602 (도평4길 45-16)	도면참조	6	없음	종속구간 변경(연장)	직권
		변경 후	도평4길	주상면 도평리 612 (도평4길 45-1)	주상면 도평리 603 (도평4길 45-20)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1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87 등 9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79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1839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
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거창군수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자녀 기준완화, 만 나이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
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시책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자녀 기준완화(안 제1조~제8조)

1) 세 자녀 이상 다자녀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2) 18세, 19세, 24세, 25세 자녀 기준 ⇒ 24세 자녀로 통일

(가) 24세 근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학령기와 사회 적응을
위한 완충기를 포함한 나이

나. 만 나이 표현 정비(안 제8조~제11조)

1) 나이 표현에서 “만” 삭제

2) 근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다.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정비(안 제12조)

1)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기산일: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를 받은 날

2) 근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sun815@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

제출연월일	2023. 1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다자녀 기준완화, 만 나이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부시책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자녀 기준완화(안 제1조~제8조)

1) 세 자녀 이상 다자녀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2) 18세, 19세, 24세, 25세 자녀 기준 ⇒ 24세 자녀로 통일

(가) 24세 근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학령기와 사회 적응을 위한 완충기를 포함한 나이

나. 만 나이 표현 정비(안 제8조~제11조)

1) 나이 표현에서 “만” 삭제

2) 근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다.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정비(안 제12조)

1)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기산일: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를 받은 날

2) 근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
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3조(「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송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4조(「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5조(「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 자녀”를 “둘”로 한다.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감경률 100분의 50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24세 이하 자녀

제7조(「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

제8조(「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감면율 100분의 100 감면대상 중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셋째자녀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1명/1과목)”를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자녀가 24세 이하인 가구(1명/1과목)”로 한다.

제9조(「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1조(「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 7세이하”를 “7세 이하”로 한다.

제12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개정 2023. 7. 18.>

5.~8.(생략)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 1. 일반공급~생략~
-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다. 다자녀 가구	10퍼센트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 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020.5.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21. (생략)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2.~8.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